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52
----------	------

제안연월일 : 2023년 9월 5일  
제안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0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영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9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해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사회적 고립청년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재정의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과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 및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 사회적 고립청년의 심리·정서적 활력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지원사업과 사회적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을 지원사업에 추가함
-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심리·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복합적인 현상과 상태로 나타나기에 고립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함

- 이에 고립청년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재고립 방지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사회적 고립청년”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제2호)
- 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다. 지원사업에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1항 제6호)
- 라. 지원사업에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을 규정함 (안 제8조 제1항 제7호)
- 마.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기능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바. 지원사업과 지원시설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함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립청년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지원사업

7.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시 추진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수행
2. 고립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
3. 고립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
4.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고립청년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지원
6. 고립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7. 고립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
8.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 또는 제10조의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생략)</p> <p>2. <u>"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u></p>
<p>제7조(실태조사 등)</p> <p>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p>	<p>제7조(실태조사 등)</p> <p>① _____          _____          _____          _____</p> <p>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8조(지원사업)</p> <p>① (생략)</p> <p>1. ~ 5. (생략)</p>	<p>제8조(지원사업)</p> <p>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6. (생략)</p> <p>② ~ ③ (생략)</p>	<p>6. <u>고립청년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지원사업</u></p> <p>7. <u>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u></p> <p>8.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p> <p>① <u>시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고립청</u></p>	<p>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p> <p>① <u>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서울시 추진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수행</u></li> <li>2. <u>고립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u></li> <li>3. <u>고립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u></li> <li>4. <u>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u></li> <li>5. <u>고립청년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지원</u></li> <li>6. <u>고립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u></li> <li>7. <u>고립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u></li> <li>8. <u>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u></li> </ol> <p><u>&lt;삭제&gt;</u></p>

현행	개정안
<p><u>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p>	
<p><u>&lt;신설&gt;</u></p>	<p><u>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 또는 제10조의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